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자정부법」 일부 개정('26. 2. 27.)에 따라 신설된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, 모바일신분증의 발급·이용·폐기에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의무 규정 및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의 기능, 유관 시스템 연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모바일신분증의 종류(안 제12조2 신설)

-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 신분증 5종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명시하고, 향후 추가 예정인 신분증을 고려해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

나. 발급·이용·폐기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무(안 제12조의3 신설)

-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
 - ※ 모바일신분증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,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등
-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급 대상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화함
- 중앙행정기관 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·재발급·폐기하는 경우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.

다.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·운영(안 제12조의4 개정)

-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,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·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종류)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
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

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, 제86조, 제87조에 따른 운전면허증
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

마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신분증

2.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에 속한 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한 신분증

제12조의3(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기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

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모바일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·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 설정
2.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
3. 그 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

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, 재발급, 폐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4(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(이하 “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”이라 한다)은 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기 등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기 지원

2. 모바일신분증 검증에 필요한 정보 보관·관리
 3. 모바일신분증 검증 사실 보관·관리, 열람·발급
 4.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
 5.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12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종류)</u> <u>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</u> 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”</u> <u>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.</u> <u>1.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에 따</u> <u>라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다</u> <u>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신분증</u> <u>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</u> <u>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</u> <u>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,</u> <u>제86조, 제87조에 따른 운</u> <u>전면허증</u> <u>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</u> <u>증</u> <u>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</u> <u>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</u> <u>령」 제101조제1항에 따른</u>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<u>마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</u> <u>증</u>		

<신 설>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
이 고시하는 신분증

2.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
에 속한 자에게 발급하는 신
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
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한
신분증

제12조의3(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
용·폐기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
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
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
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모바일신분증 발급 또는 재
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
하기 위해 「전기통신사업
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
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·사용
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
효기간을 3년 이내 설정

2.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
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모
바일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
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
조치

3. 그 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
보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안

<신 설>

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조치

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
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
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
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
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
유지해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
신분증을 발급, 재발급, 폐기
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모바일
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
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4(모바일신분증 공통기
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0조의2
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
되는 운영기반(이하 “모바일신
분증 공통기반”이라 한다)은 모
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기 등
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
기능을 수행한다.

1. 모바일신분증 발급·이용·폐
기 지원

2. 모바일신분증 검증에 필요한
정보 보관·관리

3. 모바일신분증 검증 사실 보
관·관리, 열람·발급

4.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
확보

5.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
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
분증 발급·이용·폐기 등에 관한
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
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
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
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
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717